



제 6 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

6.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

제 6 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

6.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

대상 구조물의 종합평가는 『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(국토교통부 2010. 12.)』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였다.

바닥판하면에 발생된 $cw=0.3\text{mm}$ 미만의 종방향균열은 온도변화와 건조수축에 의한 손상으로 주의관찰 후 하자만료 전 일괄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.

중점측교대(A2) 앞성토 침식손상은 교량 상·하행사이 약 300mm정도 이격되고, 신축 이음장치 유간이 넓어 노면수가 유도배수로 측면으로 넘쳐(월류)흘러 받침면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신축이음부 물받이 설치와 교대앞성토 복구 및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.

양감교의 상태평가는 “B”로 평가되었으며, 본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, 안전등급은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“B (양호)등급”으로 평가되었다.

【표 6.1】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결과

평가구분	결합지수	평가결과	비 고
상태평가	F = 0.178	B	
안전성평가	-	-	
종합평가	안전등급 : B 등급(양호)		
평 가	· 외관조사 결과, 주요 손상으로는 거더내부 바닥판하면의 종방향균열, 개구부 모서리 균열, 캔틸레버부 노치 시공미흡, 교각 코핑부 균열 등이 확인되었으며, 구조적인 손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· 내구성조사 결과, 콘크리트 강도, 탄산화시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· 상태평가 및 내구성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, 안전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,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,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“B등급(양호)”지정됨		

※본 용역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.

